

1. 개정이유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5항에서 위임한 성교육 및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예방교육의 시기·시간·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문기관의 교육 시기·시간·내용 및 비용 규정
(안 제3조 제2항 및 제5항 신설)

- 1) (시기·시간) 연 1회, 1시간 이상
- 2) (내용) △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, △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에 관한 법령, △성폭력 등의 발생시 구제절차, △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
- 3) (비용) 전문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가 속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음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)”을 “(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9조 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, “말한다)”를 “말한다)와 대중문화 예술인”으로, “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”를 “교육대상자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교육은 영 제9조의2의 전문기관이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, 연 1시간 이상으로 한다.

1.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
2.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(이하 “성폭력 등”이라고 함)에 관한 법령
3. 성폭력 등의 발생 시 구제절차
4.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

⑤ 영 제9조의2의 전문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 대상자가 소속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(實費)를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) ① 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, 연 3시간으로 한다. 다만,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한다. <u><신 설></u>	제3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 의 교육) ① 법 제29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교육은 영 제9조의2의 전문기관이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, 연 1시간 이상으로 한다. 1.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2.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(이하 “성폭력 등”이라고 함)에 관한 법령 3. 성폭력 등의 발생 시 구제절차 4.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	③ ----- 제1항

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(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)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·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.

③ (생략)

<신설>

및 제2항-----

말한다)와 대중문화예술인----

----- 교육대상자에게 -----

-----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영 제9조의2의 전문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가 소속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(實費)를 받을 수 있다.